

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 운영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수개발 및 학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루터대학교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7.1.26.개정),(2018.2.2.개정),(2020.6.10.개정)

제2조(사업) 센터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(2017.1.26.개정)

1. 교수법: 교수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강의 컨설팅, 워크숍,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(2017.1.26.개정),(2017.3.15.개정)
2. 학습법: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법, 워크숍, 특강 학습기술·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(2017.1.26.개정),(2017.3.15.개정)
3. 이러닝 및 매체지원: KOCW(Korea Open CourseWare) 매체제작 지원 시스템 관리, 교육용 학습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LMS구축, 관리 및 지원 (2017.1.26.개정),(2017.3.15.개정)
4. 정규 교과목의 교수-학습 콘텐츠 제작 및 지원 등 (2017.1.26.개정),(2017.3.15.개정)
5. 삭제 (2017.1.26.)
6.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지원 (2017.1.26.신설),(2019.07.23.개정)

제 2 장 조직 및 업무

제3조(조직) 센터는 기획조정처 산하에 두며,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.
(2017.8.31.개정),(2020.5.20.개정)

1. 조직구성
 - ① 센터장
 - ② 연구교수
 - ③ 연구원
 - ④ 자문위원
 - ⑤ 운영위원
 - ⑥ 조교
2. 역할
 -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 운영전반을 관리 감독한다.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

의 교원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 (2016.12.30.개정)

② 연구교수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의 연구 관련 업무 및 실무를 관장한다. 연구교수는 박사 학위 수료 이상 소지자로 교원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. (2017.3.15.신설)

③ 연구원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의 실무 및 연구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.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직원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. (2016.12.30.개정),(2017.3.15.개정)

④ 자문위원은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교외 교수학습 전문가로 1인 이상을 두며, 센터장이 임명한다. (2017.3.15.개정)

⑤ 운영위원은 센터 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기구 역할을 한다. 운영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교내의 각 전공 및 교양 전공 교수를 포함 할 수 있다.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(2017.3.15.개정),(2020.2.25.개정)

제4조(교수지원) 센터는 교수자의 강의능력 향상 및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수법 향상을 지원한다. (2018.2.2.개정)

1. 교수역량 강화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
2. 강의개선 연구 및 강의개선 컨설팅
3. 강의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
4. 교수지원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환류
5. 기타 교수 지원에 대한 사항

제5조(학생지원) 센터는 학생의 수업능력 향상 및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의 수업 향상을 지원한다. (2018.2.2.개정)

1. 학습역량 강화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
2. 학습자 특성 연구 및 학습코칭
3. 글쓰기 지원 및 글로벌 프로그램 지원
4. 학습지원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환류
5. 기타 학습 지원에 대한 사항

제5조2(매체지원) 센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매체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한다. (2020.05.20.신설)

1. 온라인 콘텐츠 설계 및 개발 지원
2. 수업용 기자재 사용법 교육
3. 온라인 수업 및 학습방법 교육
4. 통합학습관리시스템(LMS) 관리 및 운영
5. 기타 강의매체자료 제작지원

제 3 장 회 계

5-4-1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 운영 규정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원은 교비에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 (2018.2.2.개정)

제7조(예·결산) 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.
(2018.2.2.개정)

제8조(운영세칙)

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(2018.2.2.개정),(2019.07.23.개정)

① 센터장은 비교과과정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에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보고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센터장은 비교과과정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해당 차년도 1월에 비교과 (프로그램) 인증제를 통해 환류를 반영한 차년도 연간계획서를 1월 중으로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각 호 관련 환류 등 체계(PDCA)를 구축하여 운영하되, 성과관리센터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확정, 시행한다. (2019.9.4.개정)

제9조(포상) 삭제 (2017.1.26.삭제)

제10조(유관부서 협조)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 부서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 등 지원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. (2017.1.26.신설),(2018.2.2.개정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